



III. 법인세법 전조문의 핵심 쟁점 요약



제1조 정 의

-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 설립법인, 「사립학교법」·특별법상 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의 정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연도 : 법인의 소득을 구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일반적으로 만 1년임)
- 연결납세방식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의 손익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 연결법인 및 연결집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으로 연결법인 전체를 연결집단이라 함.
-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법인을 연결모법인이라하고, 연결모법인의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연결자법인이라 함.
- 연결사업연도 :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제2조 납세의무

- 내국법인 : 수익사업·비수익사업 모두에 대해 전세계소득 과세
- 외국법인 : 수익사업·비수익사업 모두에 대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내국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 대해 전세계소득 과세
- 외국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 대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안됨.

- 법인세 원천징수분 세금의 납세의무 : 내국법인, 외국법인,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모두에 납세의무 있음.
- 연결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있음.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부과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되고 청산소득은 비과세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분야로만 한정함(수익사업분야 : 일반사업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출자지분양도수입, 부동산취득권·지상권 및 이용권·회원권 등 양도수입,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아닌 일반용도 고정자산 처분수입, 계속적 행위의 수입으로서 채권 등 매매차익 등임).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수익사업소득만 과세됨.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통합소득에 과세됨.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를 부과할 때 소득의 귀속과 거래의 내용에 있어 외관·법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의거 부과함(실질귀속자 과세, 실질내용대로 과세).
- 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나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계속되는 법인이 다르면 실질귀속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 또한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본 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 요약하면, 거래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제5조 신탁소득

- 신탁재산의 소득은 통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영·관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지정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으로 흘러가는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 있다 하더라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당해 신탁의 위탁자 및 이의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법인인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신탁회사 고유업무상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구분경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6조 사업연도

- 사업연도는 법령·정관상 정해진 1회계기간으로 하며 최대 1년임.
- 내국법인의 법령·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대해 따로 규정 없으면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함.
-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 사업연도 규정이 따로 없으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어도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발생시 1달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함.
- 사업연도 신고해야 할 법인이 신고 안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함.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확정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다음 날부터 3개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적법기한(3개월내)내에 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년이 안되더라도 1사업연도로 보며, 해당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며, 1개월 이상이면 그대로 하나의 사업연도로 봄.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사업연도중 해산 :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등기일, 해산일)까지 1사업연도로, 해산등기일(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각각 1사업연도로(각각 별도 사업연도임)
- 청산 중 법인의 잔여재산가액확정 :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된 날까지
- 사업연도중 합병·분할·분할합병 사유의 해산 :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혹은 분할등기일)까지
- 청산중 법인의 사업계속 :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사실상의 사업계속일)까지가 1사업연도,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가 다시 1사업연도임.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봄.
-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 개시일부터 국내사업장 가지지 않은 날까지(다른 국내사업장 계속 보유하면 사업연도 별도의제 안함. 계속 적용)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양도소득발생없음의 신고 : 당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득없음의 신고일까지

제9조 납세지

- 내국법인의 납세지 : 본점·주사무소소재지(국내에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 법인격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부동산소재지, 직전년 수입금액이 큰 부동산소재지, 사업장 없는 단체는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소재지 등임.



- 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 : 부동산임대자산이나 양도자산 등 해당자산의 소재지
-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 주된 사업장(최초로 납세지를 정한 곳으로 판단함)소재지, 2개 이상의 자산 소재하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선택신고한 장소임.
-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 : 국내법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국내소재지 없는 경우는 양도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임.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납세지 법정 장소가 부적당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납세지 지정하고, 이를 납세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납세지 지정 사유 : 소재지·등기지 불일치, 본점 등과 자산소재지 및 사업장의 분리 등 조세포탈 소지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 판단 불능인 경우, 다수자산소유 외국법인이 신고안한 경우 등임.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법인의 납세지 변경시 변경일부터 15일내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른 납세지 변경 신고로 대체 가능함).
- 납세지 이사·이전변경일부터 15일내의 적법신고가 없는 경우 종전 납세지를 납세지로 하며, 적법기한후 변경신고하면 신고한 때부터 납세지로 함.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12조 과세관할

법인세는 납세지(적법 납세지, 지정된 납세지,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즉 법 규정상 적법한 납세지

로 확정된 장소의 관할세무서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관할권자이다.

제13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계산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 \ominus 손금)에서 ① 10년내 발생된 이월결손금(2009년부터 적용, 2008년분까지는 5년임),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금액은 순서대로 차감(-)하여 계산함.
- 10년 초과된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10년내 결손금도 발생연도순으로 순차로 공제함(결손금은 신고 및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결손금에 한정함).
-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익금에 대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중소기업의 당연도 결손 중 전년도 이익과 상계공제된 금액은 향후 공제되지 않음.
- 그러나 자산재평가적립금과 상계액, 다른 이익잉여금과 상계된 경우라도 세무상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은 살아있음.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각사업연도소득 : $\text{익금총액} > \text{손금총액} : \text{익금총액} \ominus \text{손금총액}$ 으로 계산함.
- 각사업연도결손금 : $\text{손금총액} > \text{익금총액} : \text{손금총액} \ominus \text{익금총액}$ 으로 계산함.
- 결손금은 향후 10년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함.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은 $\text{익금총액} \ominus \text{손금총액}$ 으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익금이란 자본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 하는 순자산증가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수익금액의 열거유형을 보면, 표준산업분류상의 모든 사업수입, 자산양도금액, 자산임대료, 자산평가차익, 무상받은 자산액, 채무감소·소



멸액, 과거 손금의 환입액, 당기비용으로 손금계상된 적립액, 특수관계자가 분여해준 이익, 법인에 귀속될 제반수익 등이다.

- 이밖에 법인의 순자산증가로 보는 금액은 ①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시가미달하는 유가증권 매입가액 차액, ② 법인세액공제 적용(일종의 선납세액)된 외국법인세액상당액, ③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배분액 등이다.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의제배당 과세소득(이익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금액 : 법인익금산입, 개인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됨)
 - 자본감소, 감자차익,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 무상주 교부액, 토지관련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시 회사의 자기주식보유로 인해 다른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해산법인주주의 잔여재산분배초과액, 합병관련차익, 법인분할관련차익, 자기주식소각익의 소각일부부터 2년내 자본전입(자기보유주식에 대한 자본준비금 등의 2년후 자본전입관련 무상주 교부액은 익금불산입됨)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항목 : 익금불산입항목
 -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주 교부, 토지 이외 일반재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 의제배당 익금산입시점 : 주총 등의 결의일, 사원의 퇴사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등
- 의제배당계산시 재산가액평가액 : 주식인 경우 액면가·출자금액, 주식배당은 발행금액, 일반재산의 시가, 무액면주식가액은 발행자본금 등(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주식배당은 "0"으로 함)
- 각 주식변동법률 행위별 의제배당의 익금산입 여부

행위·거래	의제배당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일반감자, 퇴사	감자차익	
무상증자 : 자본전입	일반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토지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 일반재평가적립금, 합병·분할 자기자본 등의 조정차익

행위·거래	의제배당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대한 배정액	자기주식보유법인의외의 기타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식가액, 2년내 자본전입	당해 법인 자체가 받는 배당, 자기주식소각이익의 무상증자차익 중 2년후 자본전입
기 타	해산·분할·합병관련 차익	차익이 없는 경우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법인의 손익거래가 아니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증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자본거래 익금불산입항목 : 주식발행액면초과액(채무의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주식금액은 익금산입),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임.
- 합병차익 중 자산평가증 승계차익과 기업분할시 자산평가증차익은 익금불산입 제외. 즉, 익금산입항목임(자산의 실질적 가치상승이며 향후 감가상각 비용인정됨).
-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행한 주식 중 시가초과금액은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가능함.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순자산증가항목의 일종이어도 특별히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자산의 임의평가차익(「보험업법」상 자산평가차익, 재고자산의 적법 평가방법 적용의 평가차익 등은 익금산입함)
- 과거 이미 과세된 소득의 당연도 이익계산액. 즉 이월익금은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한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환급액 및 타세액충당액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무상수증익과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충당액(특별이익으로 회계반영 안된 금액임)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세 해당 안분금액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배당수입×80% 등을 익금불산입한다.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① 원칙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주식의 출자비율 8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0%)를 기준으로
 - 기준비율을 초과하면 : 수취배당액의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며,
 - 기준비율 이하시 : 수취배당액의 80%를 익금불산입함.
 - ② 예외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자 관련금액만큼을 익금불산입 계산금액에서 제외(차감)함(다음 금액 차감한 금액만 익금불산입).
 - 지주회사가 금융차입금 보유시 : 차입금지급이자×(자회사주식 등의 장부가액×100% 및 80%÷자산총액)을 익금불산입 해당액에서 제외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및 타법인(1% 초과)에 출자시 (일종의 연결·중복출자임) : 수취배당액×익금불산입율(100%, 80%)×자회사의 타법인주식 등 가액÷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출자받은 주식 등 가액은 익금불산입 해당액에서 제외함.
- 지주회사의 요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도 포함)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법인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립 전환의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도 포함함).
- 자회사의 요건은 첫째, 지주회사가 내국법인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주권상장법인 20%, 벤처기업은 20%) 이상을 직접 보유하여야 하며, 둘째,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셋째, 조특법에 의해 소득공제되거나, 비과세·면제되는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수입금액이 아니어야 하며, 넷째,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법인세 신고시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18조의3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일반법인(기관투자자 포함, 비영리법인은 제외)간 투자지분 100% 소유이면 수입배당금액의 전액, 50%(주권상장법인은 30%) 초과인 경우는 수입배당금액×50%, 투자지분 50%(상장은 30%) 이하인 경우는 수입배당금액×30%를 익금불산입함(법인이익의 이중과세방지).
- $\text{익금불산입금액} = \text{수입배당액 전액 또는 수입배당액} \times 50\%$ (혹은 30%) \ominus $\text{차입금이자} \times \text{자회사주식가액} \times 50\%$ (혹은 30%) / 당해 본 법인의 대차대조표 자산총액
- 익금불산입 요건
 - ① 취득보유일부터 3개월 이상된 주식만 해당
 - ② 수입배당금액명세서제출
 - ③ 손금불산입이자는 제외
 - ④ 주식가·자산총액은 적수계산
- 익금불산입혜택적용안되는 경우
 - ① 결산기말 3개월내 주식외 배당금
 - ② 기관투자자·지주회사
 - ③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
 - ④ 비영리내국법인

제19조 손금의 범위

-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금액임(자본·출자·환급·잉여금처분 등을 제외함).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및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및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업무관련성 있는 통상범위의 수익대응비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된 결손금
- 손금의 구체적 열거 예시내용 : 상품·제품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인건비, 고정자산수선비, 감가상각비(부당행위계산시 시가미달 고정자산차액의 감가상각비도 해당), 자산임



차료, 차입금이자, 미회수 매출세액미수금, 자산의 평가차손, 제세공과금, 사업자 조직한 법인단체, 등록조합, 협회의 회비, 탐광비, 무료진료가액, 무상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 업무관련 해외시찰, 직업교육 훈련과정, 현장실습수업수당비용, 특별학급·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운영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 기타 법인에 귀속될 제반 금액, 장식용 소액(취득가액 300만원 이하)미술품 등의 구입비용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채무자의 파산 등 열거된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손금산입함.
-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간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손금불산입함(구상채권의 대손사유 발생시 손금인정).
-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나중에 결국 회수한 금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자본거래항목의 손금불산입 : 잉여금처분액을 당연도 비용·원가·손실로 반영 계상한 금액, 건설이자의 배당금(사업개시전 이익, 잉여금 발생전에 배당하는 금액),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임.
- 잉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법의 성과급 등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성과급,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방법의 성과급, 근로자(임원제외)에게 결산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지급 지급의 손금산입 등만 : 손금산입함. 나머지는 손금부인

제21조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법률상 의무금 및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유형과 예시
 - ①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외국법인세액,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의무불이행 납부액 및 납부세액, 의무불이행가산세,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② 반출되었으나 판매안된 제품의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액
- ③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
- ④ 불필요공과금(의무적 납부액이 아닌 임의지출, 법령의무불이행, 위반제재금 등)
- ⑤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한 법인세 산출세액 자기해당분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항목으로 열거(시행령 제 19조제9호)되어 있지만, 본조는 자산평가차손을 비용·손실로 처리했다 하여도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그러나 해당 자산이 원가에 투입되거나 매각되어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거의 평가차손 원천의 손실이라도 손금으로 반영됨.
- 자산의 평가차손 중 손금산입되는 것 : 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론에 의한 평가손실(원가법 적용금액과 장부상 기재금액과의 차이액은 손금산입됨), 파손·부패 등 사유로 정상가액 판매불능자산, 천재·지변·화재 등 사유로 파손·멸실된 것,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회사 보유주식의 부도발생시 평가손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에서 손금으로 계상(재무제표상 비용, 손실 등의 손비결산반영을 뜻함)한 경우만, 세법상 $\text{상각대상금액} \times \text{상각방법선택} \times \text{내용연수별 상각률}$ 로 계산한 상각범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며, 상각범위액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기로 유보하여 상각범위액이 부족한 시인부족액이 있으면 손금산입(추인)함.
- 상각대상자산은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기계장치·선박·항공기·차량·동물·식물 등 유형자산과 특허권·개발비·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 등 무형고정자산 등임(창업비 등은 당기 비용이며 당기 손금반영됨).



- 상각방법은 정률법·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등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은 계속적용이 원칙임.
- 상각범위액(=연 상각범위액×(사용월수/12)), 부인액, 시인부족액은 각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며 각 자산의 개별 부인액만을 합계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당연도 부족액부분은 개별자산의 과거부인액과 직접 대응하여 손금추인됨.
- 내용연수는 기준연수 혹은 신고연수대로 계속 적용(내용연수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는 사후신고, ±50% 범위내는 사전신고 승인받아 탄력 조정 가능)
- 기준내용연수 50%가 지난 중고자산, 재평가자산, 합병·분할승계자산의 수정내용 연수적용은 기준내용연수×50%까지 단축하거나 기준연수×100%대로 선택적용가능
- K-IFRS 도입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비한정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은 종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2014년 이후 취득자산은 기준내용연수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함.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지급가능 소득금액의 50%가 손금인정될 수 있는 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기증가액,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품,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가액 등→각 사업연도소득(전액 손금기부금항목을 빼기전 총액)⊖세법상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 해당 지급능력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1년간 이월공제 가능함.
- 공익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 각종 공익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명목을 위한 기부금지출액 등(시행령·시행규칙 열거단체나 열거된 용도에의 지출액)→총 대외기부금 포함한 지급능력기준액×10%만 손금산입,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지급능력기준 소득금액계산=당연도소득(50% 손금항목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계정금액을 반영하기 전 금액)⊖50% 손금산입범위내 인정되는 기부금액)⊖세법상 이월결손금⊖이월익금

- 지정기부금 계정금액의 지급능력기준액×10% 초과액은 당연도 손금불산입되지만, 향후 5년간 각 연도마다 지정기부금한도 미달액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산입됨.
- 지정기부금, 50% 손금해당항목이 아닌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됨.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접대비 손금불산입 : ① 1년 한도액 기준부인⊕② 투명증빙건당부인
(계산방법 : ②부인액을 먼저 제외시키고 난 잔액에서 ①의 1년 한도액을 부인하고, ①과 ②의 부인액을 제외하고 난 잔액만 손금산입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 ① 1년 한도액기준 : 기본액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 사업연도월수/12개월⊕당연도 수입금액×일정비율(수입 100억 까지×20/1만+100억 초과 500억까지×10/1만 + 500억 초과액×3/1만)
 - ② 접대 1건당 1만원(2008년까지는 건당 3만원이었으나 1만원으로 강화됨) 초과하는 경우 투명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 기명식전자화폐 등 지급수단, 현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계산서) 없는 접대비(1만원까지는 영수증·금전등록기영수증 등도 손금산입됨. 건당 1만원 초과에서 투명증빙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경조사비의 경우는 20만원 초과부터 손금불산입하며 20만원까지는 내부영수증으로 접대비 범위내 손금 가능함. 2001년부터는 법인(개별)카드사용분만 손금가능하며 개인카드분은 부인됨). 또한 위장가맹점카드접대비는 무조건 부인됨.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분은 법정증빙 예외를 인정함.
 - ③ 접대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한 지출내역과 인적사항 등 기재·보관 규정 폐지됨.
 - ④ 광고선전목적의 견본품(개당 5,000원 이하 물품 제외)을 특정고객에게만 지급해도 연간 3만원 한도내라면 접대비가 아니고 판매부대비용임.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각종 지출·경비 중 적정한 금액은 손금산입하지만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데 다음과 같이 비교요약할 수 있다.

호	계정금액	손금산입 범위액	손금불산입되는 금액
제1호	인건비	임직원 모든 급여, 인건비, 임원상여금 중 지급 규정 범위내 금액, 지배주주의 동일직급해당인건비, 규정퇴직금(퇴직연금 분담금)	이익처분상여금, 임원상여금 규정 초과액, 지배주주의 동일직급 초과 보수(규정 초과 퇴직금)
제2호	복리후생비	열거된 것(직장체육비, 연예비, 우리사주운영비, 임직원퇴직관련 보험료 등,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임직원경조사비 등)	열거되지 않은 복리후생비로서 법적·사회통념상 범위 초과액 혹은 통념상 지출필요없는 금액
제3호	여비·교육훈련비	일반임직원의 업무관련 여비·교육훈련비	업무무관교육훈련비, 지배주주의 모든 여비·교육훈련비
제5호	타법인 공동경비	매출액·출자비율·인원수 비율 등에 의한 합리적 배분경비	합리적 배분계산방법을 초과한 공통비처리액
제6호	업무비용	업무과 직접 관련경비	직접 관련성 없거나 적은 경비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이 업무무관 자산(비업무용 부동산, 각종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등
-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비출자임원과 소액주주 임원·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친족 등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된 비용(지급이자, 감정비, 등기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법령상 사용금지, 제한분은 제외).

-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 사용유예기간(일반 건축물 2년 또는 토지 5년)까지 미사용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서화, 골동품(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해 갖추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것은 제외. 즉 장식용·환경미화용은 업무용임)
- 비업무용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차입금지급이자를 당기비용손실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적용함.

순위	항 목	관련규정	손금불산입 계산방법 요건	손금불산입 처분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법 제28조 제1항제1호	채권자 인적사항 확인불능, 자금능력부적합, 거래사실불분명차입금 등	영구부인, 상여·배당처분
2	소득귀속자 불분명 채권·증권이자	법 제28조 제1항제2호	채권·증권발행법인이 직접 지급시 지급사실의 불분명, 객관적 인정불능	영구부인, 상여·배당처분
3	건설자금 충당이자	법 제28조 제1항제3호 법 제2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액 : 지급이자 × $\frac{\text{건설가계정금액등}}{\text{차입금(1,2,3제외)}} (1, 2, 3 \text{ 제외 후})$ ○ 일반차입금 지급이자 자산반영 및 손금 선택 가능 	손금불산입하여 ⊖유보하며 건설원가가산하여 감가상각으로 비용추인함.
4	비업무용부동산, 업무무관 자산, 특수관계 가지급금	법 제28조 제1항제4호 가·나목	지급이자 × $\frac{\text{해당자산 적수} \leq \text{총차입금}}{\text{총차입금}}$ (1, 2, 3 제외후)	영구부인, 기타 사외유출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



으로 보는 단체 중 기부금손비인정 대상단체(영 § 36①(1)), 법령상 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만 적용됨.

-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복지용자이자금액⊕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대출이자가 아닌 단순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 준비금 적립 허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다른 비영리법인에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될 때까지, 미사용 잔액은 5년일 때 일시익금산입하며, 해산·폐지·변경시도 익금산입함.
- 5년내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시 이자상당가산액(미사용환입한 1일당 0.03%)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
- 고유목적사업 사용개념 : 직접 인건비, 법령상의 기금,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지출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등으로 책임준비금(총 계약환급예상액+추정보험금상당액+배당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보유 보험료×예정이익률)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가능함.
- 손금산입하려면 준비금관련 명세서 제출
-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의 합한 금액의 90%를 한도로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함.
- 손금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연도 또는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함(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함).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2008. 12. 26 삭제)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 12. 29 삭제)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임원·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① 계속근로임직원 총급여의 5%(2007년부터는 5%) 상당액과 ② 퇴직급여총추계액×25%(2010년 30%, 이후 매년 5%씩 감소됨)○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범위내에서 당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며, 실제의 퇴직금지급 사유가 있으면 손금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법인이 합병·분할시 합병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며, 합병·분할합병뿐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수도거래에서도 적용함.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한 다음 사업연도 실제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초과시 익금환입 안함.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 관련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외상매출금·대여금·영업상 채권과 일반 채권에 대해 회수불확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할 수 있는바, 채권장부가액×1%(금융기관은 2%)와 채권잔액×대손실적률(=대손금/직전년 채권잔액)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한도로 함.
- 보유채권 중 회수불능대손금은 당연도 손금산입함(소멸시효완성, 정리계획, 화의인가관련 회수불능액, 파산·강제집행 등 회수불능, 부도발생 6개월 경과한 어음·수표·채권·중소기업외상매출금·소액채권(20만원) 등) ⇨ 법 § 19의2로 이관됨.
- 채권재조정 의해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현재 가치할인



차금으로 하고 대손금 계상하면 손금산입(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 시 익금산입)

- 대손충당금설정 및 대손금처리 안되는 채권 : 구상채권처분손실, 특수관계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여금 등(그러나 금융기관채무보증, 신용보증사업자의 채무보증, 중소기업지원관련 수탁기업 채무보증 등은 대손설정가능함) ⇨ 법 §19의2로 이관됨.
- 대손금발생하면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처리하여야 하며, 당연도 전액설정, 차연도 전액환입의 총액주의가 원칙임(차액만 전입·환입의 순액처리도 가능함).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방문판매공제조합 등이 설정 대상법인임.
- 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1%임.
-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된 회수불능 구상채권이 발생되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함.
- 대손금과 상계처리한 후의 차감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 과세표준신고 납부시 충당금명세서를 제출함.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국고보조금 등은 세무상 익금산입되는데, 이를 지급받아 지급받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개량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혹은 다음 사업연도(1년) 종료일까지 사용하려는 금액에

상당하는 국고보조금 해당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액에 대응하여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국고보조금 등=중앙정부보조금⊕지방정부보조금 등임).

- 인가·허가의 지연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기한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의 종료일까지 대응손금산입 반영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줌.
- 손금산입을 위해 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을,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는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위해 충당금을 재무제표상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만 손금산입 가능함(세무신고서만 반영하면 재무구조개선됨).
- 사업용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 및 해산시 당해 사유발생연도에 손금산입했던 금액을 일시 익금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시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서서히 상계되는 방법으로 익금산입되며, 비상각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자산의 처분연도에 일시익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됨.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공사부담금은 세무상 익금산입되는데, 이를 제공·지급받아 지급받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혹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할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부담금의 해당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액에 대응하여 당해연도에 대응 손금산입할 수 있음.

해당사업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집단에너지공급, 초고속통신망 등

- 손금산입을 위해 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을,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는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위해 충당금을 재무제표상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만 손금산입 가능함(기업회계상은 자산감액으로 처리, 특별이익 아님).
- 사업용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 및 해산시 당해 사유발생연도에 손금산입했던 금액을 일시 익금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시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서서히 상계되는 방법으로



로 익금산입하며, 비상각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자산의 처분연도에 일시익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됨.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보험차익은 세무상 익금산입되는데, 이를 지급받아 지급받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멸실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자산을 개량하는 경우 취득개량에 사용한 금액이거나 혹은 다음 다음 사업연도(2년) 종료일까지 사용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차익 해당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에 대응하여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손금산입을 위해 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해당 제외) 계상하는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위해 충당금을 재무제표상 계상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만 손금산입 가능함(기업회계상 보험차익은 특별이익계상).
- 사업용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 및 해산시 당해 사유발생연도에 손금산입했던 금액을 일시 익금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시충당금은 감가상각비와 서서히 상쇄해 나가는 방법으로 익금산입됨.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2001. 12. 31 삭제)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각 재화·용역별 손익귀속시기(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제1항)

- 일반상품 등 판매(단기할부 포함)재고·재화 등의 인도일(인도장소 보관일, 검사완료일, 수출품의 계약상 장소 보관일)에 귀속(인도기준) : 제1호
- 시용판매 : 상대방의 구입의사 표시일, 반송거절 시한완료일 : 제2호
- 상품 아닌 부동산 등 양도 : 대금청산기준(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및 사용수익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등기일·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 제3호

-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의 위탁자산 매매일 : 제4호
- 장기할부회수조건(2회 이상 분할, 인도일부터 최종지급일까지가 만 1년 이상)인 경우, 회수·회수할 금액과 대응비용의 (회수기준) : 장기할부조건 : 제2항
- 목적물 인도일, 용역제공은 제공완료일에 손익귀속(시행령 제69조제1항) : 그러나 작업진행률 적용 가능
- 장기건설 : 건설·제조완료정도(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익비용인식(진행기준) : 제7호
그러나 진행기준 계산불능의 장부불비 및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예약매출시는 목적물의 인도일(완공기준)로 손익인식 : 제69조제2항
- 금융업 : 이자·보험료 등의 실제 수입기준(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는 제외 :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항
-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 매매시의 수수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
- 금융수익 : 지급받은 날, 상환일, 원본전입일, 연장일, 인출일, 만기일, 해약일 등 :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귀속
- 계약 등으로 임대료 지급일, 지급받은 날(경과기간 결산반영시 반영대로) : 시행령 제71조제1항
- 1년 이상 장기임대시 당해 사업연도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익금 및 손금산입
- 기부금 : 현금주의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음.
-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매입자산취득가액 : 매입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부대비용
- 자기 제조·생산·건설인 경우 : 제조원가(원재료비·노무비·경비·설치비) ⊕ 부대비용



- 현물출자·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취득시 : 적격합병 등의 경우는 장부가액, 그 밖의 경우는 시가(금융기관의 금전채권은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
- 현물출자·물적분할·합병·분할거래시의 주주취득가액 : 장부가액⊕합병·분할대가차액⊕특수관계분여받은 이익
-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요건충족시 장부가액
-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금액 : 특수관계자의 주식저가매입차액·건설자금이자, 자산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자산취득에 따른 채권매입가액과 현재가치차액 등
- 단기금융자산 등 : 매입가액
- 취득가액에서 차감(제외)되는 금액 : 현재가치할인차금·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초과액(신주매입포함) 등
- 각종 사유발생시 취득가 영향 금액 : 법정평가증액은 가산(⊕), 감손 등은 감액(-), 자본적 지출은 가산(+), 합병·분할시 특수관계자 분여받은 이익은 더함(⊕).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법인의 자산은 「법인세법」상 특별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당초 취득원가 혹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함.
- 자산·부채에 대한 임의평가증액·평가감액은 세무상 익금·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전 금액으로 모든 사업연도의 세무상 손금·익금을 계산함(임의평가증·평가감금액은 기업회계상 재무제표에 기록되더라도 세무상 아무런 의미없음).
- 특별히 평가증금액이 인정되어 세무상 손금이나 익금되는 경우 : 「보험업법」·특별법상의 평가증
- 기업활동 순환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증·감 적용되는 경우
 - ① 재고자산의 법정평가 평가증·감 손익인정→원가법·저가법 중 선택,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중)선택신고함. 무신고, 임의변경, 신고방법 비적용시 선입선출법 적용금액과 회사회계상액 중 비교하여 큰 금

액으로 손익반영함.

- ② 유가증권(주식 등 채권)의 법정평가 후 평가손익인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신고함(채권은 개별법도 가능). 무신고, 임의 변경, 비적용시 총평균법 적용가액과 회사회계상액 중 큰 금액으로 함(장부가액과의 차손익은 기업회계상의 손익에는 반영하나, 세무상으로는 평가손익을 부인하고 나중에 실제처분시까지 유보·이연됨).
- ③ 금융기관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SPC의 통화스왑계약은 법정평가후 평가손익인정→종료일의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차감손익은 당기손금·익금인정함. 연말평가손익, 연중상환손익 모두 당기손익반영됨. 해외사업(지점 등)의 환산손익은 현행 환율법·혼합법 등 적용함.
- ④ 금융회사 외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SPC의 통화스왑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손익을 인정→최초로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평가시 이전 사업연도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함(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해야 함).
- ⑤ 이연자산 폐지→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 부실자산에 대하여 감액평가하여 손금산입 :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당기영업외 비용처리한 손금산입액 = 재고계상액 ⊖ 처분가능시가), 천재·지변·화재·수용·폐광·사용불능 등으로 파손·멸실된 고정자산(당기 특별손실처리 손금산입액 = 고정자산 장부잔액 ⊖ 시가평가액), 창업투자사 등이 보유한 창업법인발행주식 중 부도법인주식(당기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액 = 주식계상액 ⊖ 시가평가액), 파산법인 주식(시가평가액 1000원 이하는 1000원으로 평가)
- 자산·부채평가명세서와 각종 조정명세서(재고자산평가, 유가증권평가,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이연자산상각)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자산·부채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 : 임의평가차익→익금불산입 ⊖ 유보후 향후 익금반영 임의평가차손→손금불산입 ⊕ 유보후 손금추인 법정평가 적용한 손실·비용·감액→손금산입 ⊖ 유보후 차년도 이익반영



법정평가 적용한 이익·수익·증액→익금산입 ⊕유보후 차년도 손실반영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기업회계기준」 적용 및 관행의 계속 적용시 : 특별예외규정있는 경우외에는 기업회계의 처리대로 상장기업은 K-IFRS,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확정함(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판단 및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대하여).
- 본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히 규정한 경우(법·시행령·시행규칙 등)는 「기업회계기준」 적용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였다라도 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판단 및 취득원가 결정하여 세무조정함(특별규정의 사례 : 각종 손익귀속시기 중 예외거래, 예금 등 금융이자수입, 금융기관수입, 임대료,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부채평가, 이연자산).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합병시 자산양도로 보는데,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양도손익 익금·손금산입의 과세이연 요건(100% 출자자회사 합병시 양도손익은 없을 것으로 함)
 - ㉠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등(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
 - ㉡ 주식비율 80% 이상 및 일정 주주는 합병신주를 계속 보유
 - ㉢ 합병 등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제44조의2 비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합병법인은 시가로 양도받은 것이며,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 승계함.
-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시가와의 차액은 자산별로 계상함.
- 적격합병 시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등을 일괄 승계함.
- 합병법인은 사업폐지, 주식처분 등의 사유발생시 3년 이내에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액을 익금산입하고,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 등을 법인세에 더해 납부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 합병법인은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합병대가와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합병등기일부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제한

- 합병 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자산가액비율로 안분).
- 적격합병 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및 감면·세액공제 등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해당 법인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함.
-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후 5년 내 피합병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은 승계사업 소득의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손실은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 가능함.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제외)시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손익은 분할법인등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함.



- 양도손익 과세이연 요건
 - ㉠ 5년 이상 계속사업영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
 -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받아 소유지분비율(분할합병시 주식비율 80% 이상 보유)로 배정되고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보유
 - ㉢ 분할신설법인등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영위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분할로 자산승계시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 일괄 승계함.
- 양도가액이 분할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초과 또는 미달시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분할하여 익금 또는 손금산입함.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시가와의 차액은 자산별로 계상함.
- 적격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 승계함.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사업폐지, 주식처분 등의 사유발생시 3년 이내에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액을 익금산입하고,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법인세에 더해 납부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적용 배제함.
- 분할신설법인등은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분할 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결손금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자산가액비율로 안분).
- 적격합병 시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공제하고,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범위에서 적용함.
-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등기일 이후 5년 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양도 받은 자산의 처분 손실은 승계사업 소득의 범위에서만 손금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손실은 승계한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 가능함.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존속하는 경우 과세특례

- 분할(물적분할 제외) 후 존속하는 법인의 경우, 양도손익(양도가액-순자산장부가액)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함.
-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및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하여는 46조~46조의 4를 준용하나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않음.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의 자산양도차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이익 반영되면서 익금산입되는데, 이의 대응금액에 대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물적분할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
- 손금산입액은 재무제표상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차대조표에 순액계상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반영 선택할 수 있음.



- 과세이연방법 :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 주식의 압축기장총당금잔액상당액×(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가액/합병대가)
- 손금산입된 당해 자산양도차익은 당해 주식의 최종 처분시 익금환입됨이 원칙이지만, 분할등기연도 후 다음연도 3년내 승계사업폐지 및 주식처분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함.
-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제47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2010. 7. 1부터 적용)

-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시 신설법인 주식취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현물출자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식을 압축기장총당금으로 계상함.
- 현물출자요건 : ① 출자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를 하던 법인, ② 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말까지 영위, ③ 공동출자인 경우 출자자간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④ 출자법인은 80% 이상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한 사업연도말까지 보유
-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 후 신설법인이 3년 이내(총 4년) 폐업하거나 주식 등 처분시 사유발생연도에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함(합병후 승계사업 영위시 제외).
- 출자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시 피출자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함.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삭 제 (2010. 7. 1부터 적용)**

- 법인의 일반분할(물적분할 현물출자는 제외)에서 분할모법인의 기존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서 받는 분할대가 총합계액(= 신주취득가액+포함주식가액+청산법인세 등)이 분할모법인의 자기자본감소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 차이소득금액을 분할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함(자산평가 중 현물출자로 보아 과세).

- 물적분할 현물출자인 경우 승계·양도자산 차익이 분할모법인에 회계반영되지만 본 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 대응되어 과세이연됨.

제48조의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삭제 (2010. 7. 1부터 적용)

- 분할된 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는 그 경제적 실질이 결국은 완전합병과 같으므로 합병에 맞추어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법인에게도 소멸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함.
- 결손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후 3년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승계된 결손금 전액을 폐지연도에 익금산입함.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삭 제 (2010. 7. 1부터 적용)**

- 기업간 합병·법인분할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세무사항 : 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손익귀속시기 관련사항, 유가증권평가손익,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조특법」상 준비금, 채권·채무현재가치평가 및 지급보증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됨. 그리고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과 자산부채 장부가액 승계분할 경우는 모든 세무조정사항이 그대로 승계됨.
- 기업간 합병·법인분할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세무사항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 자산의 임의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일반사업법인(부동산업 제외)이 2년 이상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하던 동일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거래와 관련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익금산입되는 것에 대응하여 동액을 교환거래 당연도에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함.



- 과세이연금액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 ⊖ 현금지급액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교환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교환취득자산을 당해 교환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동일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허용).
- 손금산입을 위해 총당금을 전입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향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할익금산입하고, 교환취득한 토지·건물 등의 최종 양도시점에 일시익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됨.

제51조 비과세소득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법인세 부과 안함)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
- 「조특법」상 비과세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조특법」 제13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조특법」 제13조)
 - 위 회사가 창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조특법」 제13조)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나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증권·부동산) 그리고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는 외부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산입과 대응되는 개념임).
- 배당가능이익 =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후의 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소득공제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일반공정가·정상가격 및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함.
- 특수관계자는 법률적 관계(주주·출자자 등)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상대방(계열회사·경영영향관계)을 포괄함.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적용거래 : 고가매수, 저가양도, 불필요 부담, 불량자산대체교환, 출연금 부담, 저가용역 및 대부, 고가·고율차용·임차사용, 합병·증자·감자의 이익분여,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분여, 기타 이익분여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양도시 제외)
- 정상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상의 가격, 특수관계자 아닌 자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거래될 가격 : 정상이자·요율·임대료·교환비율·당좌대출이자율 등임.
- 특수관계자와 거래있는 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거래내역 기재) 제출
- 가지급금 인정이자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최소 이율로 계산하며, 선택한 이자율은 3년간 의무적용되며 보다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이 있으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함(금융지주회사는 평균이자율부터 적용).
 - 그러나 타법인·개인이나 무주택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고 인정이자율 계산함.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국외지점·비거주자 또는 다른 외국법인과 거래한 거래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체결상대방국가와



의 당국간 합의에 의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계산 가능함.

- 소득금액조정신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득금액조정신청일은 상호합의절차의 종결통지일 부터 2월 이내임.

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한 법인은 ①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②원화로 작성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③표시통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항목은 기말환율,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원화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함.
- 원화 외 기능통화 선택한 법인은 기능통화의 변경, 합병 등의 사유 외엔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변경이 불가함.
- 해외 기능통화·표시통화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해당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개별자산·부채별로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 등의 장부가액 \ominus 변경전 기능통화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 자산 등에 취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함.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은 다음의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 방법에 의함.
 - ① 원화를 기능통화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하여 합산계산
 - ② 해외사업장이 현지의 기능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환산하여 합산 계산(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접대비 등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항목은 본점과 합산하여 한도내 손금산입함)
 - ③ 표시통화 재무제표 환산방법(재무상태표는 기말환율, 포괄손익계산

서는 거래일 환율·평균환율)

- 원화의 기능통화 도입 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변경불가(예외적으로 서로다른 법인의 합병·인수)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경제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금액계산에 대한 자세한 필요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

제55조 세 율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

법인 구분	과 세 표 준	세율 계산방법
내국법인 (모든 법인)	2억원 이하 금액	2010년·2011년은 10%(2억원까지 과표×10%)
	2억원 초과 금액	2010년·2011년은 22%(2,000만원+2억원 초과액×22%) ↳2012년부터는 20%임.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	9%(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지가급등지역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납부함.
-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30%(미등기 40%)의 법인세를 추가납부함. 단, 임대국민주택, 임직원주택, 저당권실행취득주택, 채권변제취득주택은 과세제외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30%(미등기시는 40%)의 법인세를 추가납부함(2007년부터).
- 지가급등지역(①+②)
 - ① 지가가 분기별로 3% 또는 연간으로 보아 10% 이상 상승
 - ② 대도시권의 지역, 개발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파산선고, 농지교환 또는 분합, 환지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 귀속사업연도는 각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준용함.
 - 장기할부조건시 양도일에 전액 인식
 - 예약매출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2002년부터 폐지됨)**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외국법인세액은 당연도 법인세액×국외원천소득의 과세표준에서의 구성비율을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당해 외국납부법인세액 자체를 손금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 적용
-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손금산입 가능)의 범위(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액과 관련 부가세액)
 - ① 실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 ② 의제외국법인세액(조세조약체결된 상대방국에서 세액감면받은 경우 세액납부액으로 보충)
 - ③ 간주외국법인세액(배당금액의 원천인 당해 외국법인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자체액의 모기업 출자지분비율 안분액)
 - ④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부담한 세액 중 수입배당금 대응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text{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감면국외원천소득} \times \text{감면을}}{\text{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외국납부법인세액이 당연도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세액은 다음 연도부터 5년내에 매연도 공제범위내에서 이월공제됨.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회사가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국내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최고 한도로하여 기존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함.

- 투자신탁 등이 외국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등 자체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함.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이나 변상책임있는 타인소유자산 등 자산총액의 20% 이상 자산가액이 상실되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 재해손실세액공제액 =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액 × 재해상실비율 = (산출세액 + 가산세 - 다른 법률감면세액) × $\frac{\text{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가액}}{\text{상실전 자산총액(토지제외)}} \leq \text{상실된 자산가액}$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이나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관할세무서는 공제세액결정하여 통보하고, 공제확인될 때까지 법인세 징수유예함.

제58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와 같은 성격이므로 선납세액으로 보고 법인세액에서 공제함.
-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음.
- 세액공제를 위해 농업소득금액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해야 함.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일명 분식회계) 후 나중에 경정청구사유로 계산되는 과다납부법인세액은 즉시 환급하지 않고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납부할 정규 법인세액 및 향후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함.
- 동일 사업연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의 경정청구외에 다른 경



정청구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으로 세액공제함.

$$\text{과다납부한 세액} \times \frac{\text{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text{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감면(면제)과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
 - ① 세액감면(면제)
 - ② 차년도 이월불가능 세액공제
 - ③ 차년도 이월가능 세액공제
 -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경정세액공제
 ※ ①+② 금액(세액감면·면제액·이월불능세액공제액)이 납부할법인세를 초과하면 없는 것으로 봄. 즉, 더 이상 공제·감면되지 않음.
- 공제·감면세액 =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면제)소득}}{\text{과세표준}}$ (감면의 경우는 감면율을 곱함)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업시 구분경리함(법 제113조).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각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12월말 법인은 다음 연도 3월 31일)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함.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의 필수제출서류(빠지면 무신고로 봄)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3호서식임)) 5개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첨부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적용. 기타 첨부서류는 빠져도 무신고는 아님(원화 외의 기능통화 채택시 기능통화로 표시된 기능통화재무제표).
 - 표준대차대조표(B/S), 표준손익계산서(P/L), 부속서류를 전자신고로 제출시에는 서면제출의무를 면제함(다만,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합병·분할로 해산시 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 등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자산 및 부채명세서 제출함.
- 소득금액없거나 이익 적어 결손금 있는 법인도 신고서제출의무 적용함(무신고가산세 부과).
- 회계사 외부회계감사법적용대상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해야 함(단, 미제출가산세규정은 없음).
- 외감대상법인이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1개월 연장가능하나 세액납부시 연장일수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함.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장부상 손금계상함이 원칙이지만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도 손금반영해당 가능(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또한 이익처분상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면 손금산입 계상한 것으로 봄.
- 손금산입하는 방법(①과 ② 선택인데 ②가 유리)
 - ① 결산조정방법으로 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방법으로 손금산입방법(재무제표상 해당 자산 계정과목에서 충당금 금액이 차감(-)표시되어 순액으로 나타나므로 재무구조개선 안됨)
 - ② 신고조정방법으로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도 손금산입하는 방법(자기자본 증액되고 재무구조개선, 재무비율 계산상 유리)
- 각 자산별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손금에 산입된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는 그 준비금적립금계정금액을 처분하여야 함(법정 잉여금계정에서 배당가능 일반잉여금으로 계정과목 변경됨).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금융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상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 완결).

- 원천징수됨으로써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소득(소득금액 계산에서 불포함함) : 세법상 금융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
- 무조건 종합신고하여야 하는 소득 : 비영업대금이자 소득(대여금 등)

제62조의2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음.
- 신고 안한 자산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함(「소득세법」상의 누진세율 적용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적용하지 않음).
- 자산양도소득과세표준
= 자산양도가액 ⊖ 필요경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관련규정 준용함.

제63조 중간예납

- 중간예납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기존법인)
 - 중간예납의무없는 법인 : 신설법인 최초 연도, 청산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계산

$$\text{중간예납세액} = \{ \text{전기의 산출세액} - (\text{전기의 감면세액} \oplus \text{전기의 원천납부세액} \oplus \text{전기의 수시부과세액}) \}$$

$$\times \frac{6}{\text{전기사업연도 월수}}$$
 - 산출세액에는 가산세와 공제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포함.
-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 없는 증권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은 중간예납 적용 배제
-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방법 선택(직전년

실적세액×50%보다 적은 경우 선택)

-가결산을 꼭 해야 하는 법인 : 전연도 결손으로 세액없는 법인, 전연도 법인세액이 중간예납만료일까지 아직 미확정인 경우,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법인의 최초연도

-가결산을 임의선택 가능법인 : 당 반기 가결산하면 결손 예상, 당 반기실적이 직전년×50% 보다 낮을 경우

-중간예납세액 = 당반기 산출세액 - $\left(\begin{array}{l} \text{당 반기 해당 감면세액} \\ \text{당 반기 동안의 실제원천납부세액} \\ \text{당 반기 수시부과세액} \end{array} \right)$

-산출세액 = (과세표준 × $\frac{12}{6}$) × 세율 × $\frac{6}{\text{사업연도 월수}}$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일은 반기 6개월의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부터 2월 이내(12월말 법인이라면 6월말이 기간이고 2달 후인 8월말까지 임)
- 신설합병인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분의 50% 납부, 흡수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연도와 피합병법인의 등기일 직전연도분 합계하여 50% 납부
- 더 이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별 안분산출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봄.

제64조 납부

- 납부할 세액

= {법인세액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부터는 22%))} - $\left(\begin{array}{l} \text{감면세액} \\ \text{중간예납세액} \\ \text{수시부과세액} \\ \text{원천징수된 납부세액} \\ \text{농지세액} \end{array} \right)$ (여기서 가산세는 제

2012년부터 20%
의함)

- 납부기한 및 분납
- 납부기한 : 본법 제60조의 신고납부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 분납 : 일반법인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분납세액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제65조 물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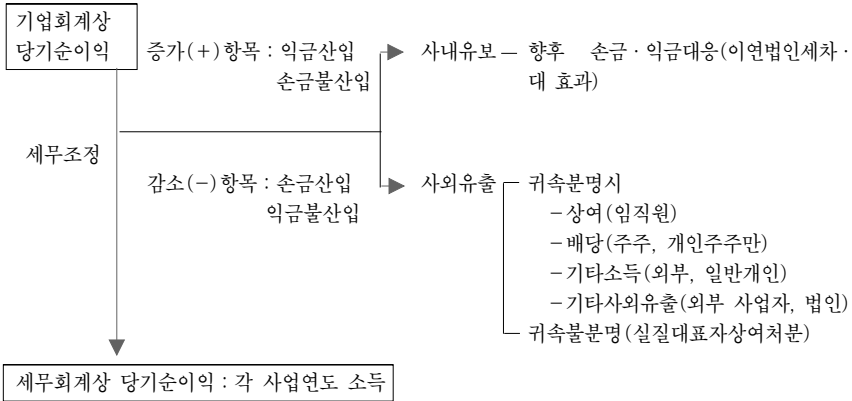
-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가 1,000만원 초과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공공사업발행 보상채권으로 납부가능
- 물납신청일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10일전
- 승인통지일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전일까지 채권수납가격 평가하여 통지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관할세무서 등 결정 및 경정사유
 - 결정 : 법인이 자발적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적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함.
 - 경정 : 법인의 적법기한내 자발적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거나 지급명세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신용카드거래의 거부·사실과 다른 신용카드전표 발급·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분식회계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산한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함.
- 결정·경정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원칙으로 하는 실지조사방법 적용이 원칙임.
- 그러나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실지조사방법대신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 결정·경정후라도 그 결정·경정 등에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발견되면 즉시 재경정함.

제67조 소득처분

- 소득처분 절차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

- 사외유출된 경우
 - 귀속자분명 · 주주 등 → 배당(개인주주는 배당, 법인주주는 기타사외유출)
 - 임원 · 사용인 → 상여(주주이면서 임원 · 사용인 경우도 상여처분)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타 사외유출
 - 이외의 자 → 기타소득, 부당사외유출의 회수 ⊕ 익금산입시 → 사내유보
 - 귀속자불분명 → 대표자에 대한 상여(실질대표자)
- 사외유출되지 않은 경우 → 사내유보
- 기타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경우
 - 접대비 한도초과액 - 업무무관 자산이자
 -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 보험업법인의 예정사업비 초과액
 - 기부금 부인액
 - 채권자 불분명차입금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법인소득금액의 추계결정 · 경정시 공제배제 규정
 - 법정이월결손금(10년내 발생 금액)의 공제를 적용안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안함.
-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 멸실되어 동업자권형(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비교)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경정시에는 이월결손금 및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
- 추계시 공제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128)
 - 각종 소득공제, 투자세액공제도 적용 배제함.

제69조 수시부과결정

- 다음의 사유로 법인세 포탈우려가 있을 때 관할세무서장은 우선 수시부과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납세자는 적법 법인세신고서는 접수해야 함.
 - 신고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때
 -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
 - 기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주한국제연합군·외국기관·외국군 등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영수하는 때에는 수시부과 가능함.
- 법인세 포탈우려가 있을 때 사업개시일부터 사유발생일까지 계산,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신고기한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발생일까지 계산
 - : 과세표준 × $\frac{12}{\text{수시부과기간의 월수}}$ × 세율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결정된 내용을 통지함.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이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내국법인의 경우는 결정·

경정내용을 공시송달함.

제71조 징수 및 환급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미납부세액(적법신고에 대해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금액)의 징수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 중간예납 미납부세액(일부 및 전부)의 징수기한 : 직전년 기준 50% 내는 경우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 가결산 방식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소득지급시 세법의무의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세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본래의 원천징수세액(본세)을 함께 지체없이 징수함(원천징수 안하였는데 이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과표에 원천징수대상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본세는 놔두고 가산세만 징수함).
-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관련 과오납세액(기납부액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초과분)은 환급되어야 하며, 환급이 아니면 다른 국세(세목이 법인세가 아니어도 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함.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결손금소급공제 가능법인 : 중소기업이면서 결손금 발생 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적법기한내에 제대로 신고하는 법인은 당연도 결손에 대해 직전년(1년내) 법인세액한도로 환급신청가능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의 환급세액계산액 = 직전연도 법인세액 - (직전년 과세표준 - 소급공제결손액) × 직전연도 세율 ≤ 직전연도 과세표준 × 직전연도 법인세율 (감면세액 차감) (=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된 세액을 뺀 금액 = 직전연도 법인세액)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즉시 환급세액결정하여 환급해 줌.
-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세 환급후 과세표준세액이 경정되어 결손금



감소시 해당세금(또는 비중소기업의 법인세 환급액) ⊕ 해당세액 × 하루 0.03%의 이자상당액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제72조의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세무서장은 분식회계 등으로 경정에 있어 법인세의 각종 세액차감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함.
 - 환급금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순차적으로 하고 남은 잔액으로 한다.
 - 환급가산금은 ①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 이후에도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 환급금 ⊕ 국세환급가산금
 - ②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전액 공제한 경우 : 분식회계 등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국세환급가산금
- 해산시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차감한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

제73조 원천징수

-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및 징수되는 소득자
 - ① 이자소득금액 :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2001.6.30까지는 20% 지속
 - ② 배당소득금액 중 투자신탁의 이익 : 14% } 2004.12.31까지는 15%이었음.
- ①, ② 소득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신탁재산귀속소득은 해당소득이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자 : 법인에게 이자소득, 신탁수익분배금지급자(주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수권·위임받은 자, 대리하는 자, 어음·채무증서 인수·매매·중개하는 금융회사·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의 중도매매거래에서는 자기보유기간분 이자의 세액을 거래가액에 가감(+, -)하여 매도자가 당초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세액 납부시기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소규모법인(10인 이하 고용인원 회사)이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은 6개월 단위 반기별 납부가능 : 금융·보험업은 제외
-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
 - 법인세 제외·면제되는 소득
 - 금융·보험업, 신탁회사의 신탁재산귀속소득 : 원천징수됨.
 -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미지급소득
 - 비영리법인이 대부한 용자금과 비영리법인 연합회 등에 대한 예탁이자수입
 - 비영리기관투자자의 국·공채 이자소득
 - 조합원 공동 예탁자금의 이자소득
 -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주택기금 예탁자금 이자소득
-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 제외 : 법인세 비과세·면세 채권, 외화표시채권
-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을 이자계산기간 중 매도하는 경우 중도매도일에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해산하는 경우 : 청산인과 잔여재산분배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승계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합병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 승계

제74조, 제75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함.
-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서 자기보유분 세액을 거래가액에서 차감하며, 채권매도자를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로 하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함.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 부징수(원천징수 안함)



제76조 **가산세**

- 일반무신고·무기장가산세 : 세액×20%와 수입×1만분의 7 중 큰 금액
-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 세액×40%와 수입×1만분의 14 중 큰 금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10%
- 초과환급가산세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10%
- 부당초과환급가산세 : 부당 초과환급세액×40%
- 일반미납부가산세 :
 - 미납액×미납기간 날짜수(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 당일까지)×하루 0.03%(=연 10.95%)
 - 초과환급세액×초과 환입된 기간의 날짜수(환급일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0.03%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및 미납부가산세 : ①과 ② 중 큰 금액
 - ① 미납부세액×0.03%×미납일수≤미납·미달세액의 10%
 - ② 미납·미달세액의 5%
- 적격투명지출증빙(신용카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미입수가산세 : 미입수거래금액×2%
- 주식·지분변동상황 미제출·불성실기재가산세 : 해당 미제출 등 주식액면가×2%(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함)
-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가산세 : 지급명세서불분명 및 미제출금액×2%(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징수함)
-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불성실가산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의 2%, 발급내역을 작성·보관 아니한 가액의 0.2%
-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 5천원 이상 거래시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가액의 5%,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는 0.5%(미가입 기간 대비 계산) 가산함(산출세액 없어도 징수).

제76조의2~제76조의6

성실납세제도

- 개요 :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을 철저히계 자료에 근거하여 회계의 투명성에 노력하고 근거과세를 유지하는 성실중소법인에 대해 각종 경비의 복잡한 손금인정한도 계산 등의 법인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함.
- 적용대상법인 :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ERP 또는 POS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용 계좌개설 등으로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한함(다만, 외부감사대상법인,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
- 과세소득계산방법 :
 - 각 사업연도소득(익금-손금)에서 5년 이내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나머지의 한도계산 등은 생략함(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 조특법상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손금계상여부에 관계없이 건물과 구축물을 20년,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5년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함(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0만원(일반법인은 100만원임) 이하인 경우 즉시 상각함).
 - 기부금한도는 매출액의 0.5%임(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접대비 한도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연 1,900만원을 적용함.
 - 과다경비(부당과다경비 제외), 업무무관비용 등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임직원 총급여의 20%임(일반법인은 추계액의 30%).
- 표준세액공제 적용 : 산출세액에서 25%(수도권은 15%)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함.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배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한 해당세액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함.
-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



제76조의8~제76조의22

연결납세제도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 자법인(2 이상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적용함)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결모법인·자법인 등의 사업연도는 일치하여야 하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정요건 갖춘 연결자법인은 모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
-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함.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신고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본래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봄)해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음.
- 연결모법인이 새로운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나,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따라서 연결자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연도는 연결 법인세대상에서 제외됨).
 - 연결자법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거나 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배제함.
-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일반방법대로 소득 또는

결손금의 계산)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수입배당금액 익금산입, 손금부인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의 손금 산입)
-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연결법인간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연결법인간의 접대비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 등 양도소득의 손금 및 익금불산입)
-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세무조정액을 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처분손실은 아래의 한도내에 손금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손실은 결손금으로 보아 아래의 한도내에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합병시 5년내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 완전자법인이 된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발생한 자산의 처분손실 : 완전자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 × 법인세율
 - 연결법인이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일반법인의 법인세특례와 같음)를 합산한 금액을 연결산출세액으로 함.
 - 연결산출세액 중 각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으로 연결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모법인의 납세지로 하나 산출세액은 각각의 연결법인에 귀속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 연결법인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연결법인간 출자 현황 및 거래 명세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외감대상 연결법인이 결산미확정시 신고기한 1개월 연장됨).
 - 연결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내에 납부해야 함(법 제63조 준용).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물납과 연결법인간 세액안분지급
 -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연결중간예납세액, 원



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결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납부해야 함.

-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법인의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기타·가산세 중소기업 적용
 - 연결법인세신고의 결정·경정·징수·환급·가산세 등은 일반규정대로 적용함.
 - 연결법인세신고되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적용함.

제77조~제90조

청산소득의 과세 및 신고납부

- 청산소득 과세표준 = 청산소득금액(잔여재산의 분배액 등) - 기존 주주 등의 자기자본의 총액, 이월결손금은 공제 안됨.
- 청산소득 납세의무자 : 청산법인 자체, 청산인, 잔여재산 분배자 등
- 청산소득 과세제외 법인 등 : 「상법」상 조직변경, 특별법상 개정·폐지 관련 변경, 기타 법률상 변경, 금융기관 합병,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 청산소득의 계산방법 : 일반 해산·청산 : 잔여재산 순액 - 자기자본
- 청산소득 세율 : 일반세율과 동일하게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만 22% (2012년 사업연도부터 2억원 초과분 20% 적용)
- 청산소득 확정신고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계속등기일부터 ⊕3개월내
- 청산소득 중간신고 : 기준일부터 1개월내(기준일 :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일, 잔여재산미확정시 해산등기일부터 1년된 날, 해산등기)
- 신고시 납부액 : 청산소득 × 세율 - 중간분배시 납부액 - 잔여재산가액 예정액 관련 납부액 × 세율
-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적용방법으로 결정·경정 : 재경정함.
- 징수 : 청산소득 법인세 전부·일부 미납시 : 미납된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2달내 징수
- 가산세 : 청산소득 무신고, 무기장, 과소신고 가산세(산출세액 × 40%, 20%, 10%)와 ⊕미납부 가산세(1일 0.03%) 적용됨.
- 미납부관련 가산금·증가산금 : 「국세징수법」 규정 중 가산금·증가

산금 규정 적용 안됨.

제91조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
 - ①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부동산임대소득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 -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 10년 이내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 = 과세표준
 - ②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 국내원천소득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임.
 - ③ 국내사업장 있어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의 과세표준 : 각 소득구분대로 국내원천소득 따로따로 계산함.
- 선박·항공기 외국항행소득의 과세소득공제는 국내사업장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도 적용됨 (즉, 해당액 빼고 과세함).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국내사업장 가진 외국법인,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연도 국내원천소득합계액은 국내원천 발생수입·비용 등 특별 규정을 적용하면서 본 법의 일반적 익금·손금규정(본 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 「소득법」의 중요 익금·손금규정(「소득법」 제138조 등)을 준용하여 계산함.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있어도 전체 수입액에 대해 원천징수될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방법
 - ① 부동산양도소득은 일반적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국내원천소득 = 매각가 ⊖ 취득가 ⊖ 비용)
 -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불인정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불분명시 기준시가)
 - ② 나머지는 각 소득유형별 총 수입금액(총액임. 관련 비용 있더라도 차감안함)



- ③ 주식·출자증권·기타 유가증권양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 수입금액(주식 등 양도가액)과 차액(=유가증권양도가액-취득원가)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④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간에 정상가 미달하는 유가증권 거래인 경우, 유가증권양도가액에 대하여 실제가에 관계없이 정상가액으로 하여 정상가 혹은 정상가 차액 중 유리한 것 선택함.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한 직접 거래는 양수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 검토서를 제출해야 함.
- ⑤ 지점이 해외본점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금액에 대한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손금부인시, 지점의 업무기능·소유자산·위험도 등을 반영한 금액을 선택 가능함.
 -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추산액에 미달하여도 업무기능·자산·위험도를 반영하여 배분한 자본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음.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국내세법상 법인세과세될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음.
 - ① 금융이자소득(국내사업장에게서 받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필요경비 손금산입되는 것, 국외사업장이 직접 빌린 차입금이자 제외됨. 즉, 과세안됨)
 - ② 내국법인, 법인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사업이익권 배당(건설이자배당) 등은 제외) 및 「국조법」상 배당처분된 금액
 - ③ 부동산관련 소득(국내소재부동산, 부동산상권리,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관련 개발·이용권의 양도, 임대·운영관련 소득)
 - ④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 임대소득(등록동산 임대소득 등)
 - ⑤ 각종의 사업소득(국내원천, 국내영위, 혹은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능소득 포함)
 - ⑥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항공료·숙박비 등의 실비변상적 대가를 차감한 순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 ⑦ 부동산 등 양도소득(토지·건물·기타자산·부동산 주식등(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등), 그러나 상장·비상장주식·출자증권은 ⑩의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
- ⑧ 사용료소득(기술·권리 등의 국내사용 혹은 대가지급, 권리양도소득, 자산대여소득, 즉 사용지 기준, 지급지 기준 적용. 그러나 조세협약상 사용지를 기준하도록 규정되면 대가의 국내지급인 경우도 국내원천소득아님). 다만, 특허권 등이 국외등록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시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봄.
- ⑨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 포함)·양도소득(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발행된 각종의 유가증권 양도관련 소득, 내국상장·비상장주식, 외국법인 발행주식으로 국내시장 등록부분, 상장·코스닥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도 포함)
- ⑩ 기타소득(①~⑨열거 이외 별도 열거소득: 보상금·배상금(=실질손해초과액)·수증소득·매장물소득·포상금·추첨소득 등, 국내수행 기타사업, 자산제공의 경제적 이익, 특수관계자간 불균등증·감자, 합병 등의 불공정자본거래로 발생하는 특정주주의 보유주식가치증가금액) 및 「국조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93조의2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10. 12. 31 삭제 - 법 § 98②으로 개정 이관)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 국내사업장의 해당 예시: 지점·사무소·영업소, 상점·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공장·창고, 건축장소·건설·조립·설치현장(6개월 초과), 고용인의 용역제공장소(12개월중 합계 6개월 초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사용역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수행장소), 광산·채석장·자원탐사·채취장소



- 고정장소 없어도 종속적·포괄적 대리인은 고정사업장임(계약체결권 한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 국내사업장 아닌 경우 : 단순구입장소, 자산의 저장·보관장소, 예비적·보조적 업무장소, 단순 가공위탁장소

제95조 세 율 (제55조 준용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국내 지점 등, 부동산양도소득 발생장소) 종합합산과세시 세액 : 각 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2억까지 10%, 2억 초과분부터 22%(⊕지가급등지역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양도차익×10%)

제95조의2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법인도 국내지가급등지역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납부함(법 §55의2 준용)
- 양도소득금액 = 토지 등 양도가액 -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비용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등을 계산하고 난 송금가능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비견되는 추가 세금(지점세)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함(다만,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 국내법인의 외국사업장에 추가과세하지 않으면 추가납부 안함).
- 실제 송금된 이윤이 직전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과세
 - 미과세누적 유보소득 한도초과분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 제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추가 세금계산 = [(국내사업장 세무소득 - (법인세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와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 - 소득할 주민세 등 - 재투자 인정되는 금액 - 과소자본세제 적

용에 따른 손금불산입 금액)] × 25% (해외송금관련 이자·배당 원천세율임. 조세조약에서 더 낮게 정하면 그에 따름)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국내사업장 종합합산법인(국내사업장 있는 법인, 부동산소득 있는 법인, 국내사업장 없어 원천징수되고 부동산양도소득있는 법인)의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등에 내국법인 규정 전반 적용함(각 사업연도소득) :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소득이 합산과세소득에 포함 된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액으로 공제됨.
- 외국법인 본점 결산 미확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하며, 세무서장은 7일내 결정여부 통지하고, 승인된 법인은 연장신고가능
- 외국법인 연장신고납부시 추가세액 : 일반 결산 산출세액 × 연장납부일수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납부일까지의 날짜수) × 3/10,000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지점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됨)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하는 경우〉

- 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 관련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해서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함(사업소득·운송·동산 임대소득은 지급액 × 2%, 인적용역소득은 지급액 × 20%,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은 지급액 × 20% (채권이자소득은 지급액 × 14%), 예납적 원천징수되는 부동산 등 자산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액(정상가액) × 10%와 양도차익(정상가액과 취득원가 ⊕ 양도비용의 차액) ×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납부세액으로 함).



다만, 외국법인의 국제 등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 (인하 및 영세율)

- ②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이자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 지급시 직접 지급자가 아니어도 계약 조건상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함.
- ③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지만 종속대리인은 아닌 자(국내사업장 아닌 경우)가 국제운수선박 : 항공기 운항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함(국제운수 상호면세규정 있으면 징수 안함).
- ④ 유가증권을 증권회사 통해 양도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며, 주식상장시 기발행주식의 매출인 경우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함.
- ⑤ 건축, 건설, 기계장치 설치·조립·기타 작업 및 인적용역 소득지급시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도 원천징수 적용함(단,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는 원천징수 안함).
- ⑥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직접 지급되어도, 지급자가 국내 본점법인, 국내사업장 가진 외국법인이면 그 지급자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따라서 국내원천소득은 : 각종 열거 국내원천소득 ⊕ 외국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소득 ⊕ 국내대리점의 국제운수관련 소득 ⊕ 유가증권 양도·모집 매출소득 ⊕ 건축·건설·기계장치 설치소득 ⊕ 국외에서 직접 지급되는 국내사업장의 소유한 자의 지급액 등임.
- ⑦ 국내자산을 경매·공매의 방법으로 양도시 경매대금의 배당·공매대금의 배분자가 외국법인에 실제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의무자는〉

- 각종 열거 소득지급자 ⊕ 외국차관자금의 지급계약자 ⊕ 선박·항공기 국내대리점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건축·기계·플랜트 소득지급자 ⊕ 국외에서 각종 소득지급하는 국내사업장 소지자 등임.

〈원천징수불성실관련 불이익 및 절차〉

- ① 원천징수 지연납부·미납부시 : 원천징수세액 × 10%의 가산세 추가납부함.
- ② 원천징수불이행·불성실납부시 : 원천징수할 본세금액 ⊕ 본세금액 × 10%의 가산세를 징수함(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불성실시에는 가산세 징수는 안함. 본세는 징수함).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같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 연 2회 이상 양도시 : (내국법인 법정사업연도의 1년간 양도차익 총액×세율) - (기납부원천징수세액(없는 경우 0))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내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국내사업장 없는 당해 외국법인, 세무서 : 주식 등 발행법인 본점의 관할세무서)
- 과세되는 경우 : 주식 등 양도차익의 거래국 과세, 일정기준초과시 과세되는 경우만,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과세됨.
- 과세안되는 경우 : 주식 등 양도차익의 본국 과세국가, 연 1회 거래로 원천징수된 경우, 일정기준 이하로 과세제외되는 조건인 경우, 국내사업장의 실질적 귀속으로 아예 합산된 경우는 별도 신고납부 과세안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인이 신고·납부함.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 : ①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을 지급하는 자, ② 외국법인에게서 이자받기전 채권을 매수하는 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제외)
- 채권 등 최종보유 이자소득 직접 지급받거나 채권 등을 매도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원천징수방법
 - ① 외국법인세율 > 일반세율(14%)인 경우
 - ㉠ 보유기간입증시 (보유기간이자×외국세율, 비보유기간이자×일반세율)
 - ㉡ 보유기간입증불능시 : 이자소득 지급전액×외국법인세율
 - ② 외국법인세율 < 일반세율인 경우



- ㉠ 보유기간입증(보유기간이자×외국세율·비보유기간이자×일반세율)
- ㉡ 보유기간입증불능시(총 이자지급전액×일반세율 14%)
- 채권 등의 중도매각한 외국법인의 세액
 - ① 외국법인세율 > 일반세율인 경우 : 일반세율대로 거래 정산, ⊕ 추가 납부액 (= (이자소득) × (외국법인세율 - 일반세율))
 - ② 외국법인세율 < 일반세율인 경우 : 일반세율대로 거래 정산, ⊕ 세금 환급신청 (= (이자소득) × (일반세율 - 외국법인세율))
-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납부기한, 가산세 납부·징수 등 법 §98① 준용)

제98조의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소득최초지급일의 다음달 9일까지 제출해야 함.
- 반복 지급되는 소득의 경우 최초 대가지급시만 면제신청해야 함.
- 신청서 제출제외 대상소득 : 국내법의 비과세·면제소득, 사업·인적소득

제98조의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국내법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이자·배당·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외국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갖춰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해 기납부세액 환급가능함.
- 국세청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받은 펀드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함.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국내 인적용역 제공으로 20%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제공기간(불분명시 체류기간)동안 발생한 제반비용을 뺀 금액을 용역제공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일반외국법인 방법대로 자진신고·납부함.
- 신고·납부시 원천징수된 20%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제100조~제108조 특별부가세 계산규정(2002년부터 삭제)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법인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경우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설립신고서+정관+주주명세)
-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일부부터 2달 이내에 설치신고(설치신고서+본점 등기서류+정관+지점 등기부등본 등)
- 외국법인의 부동산소득·산림소득 있는 경우도 국내사업장 설치신고함.
-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 개시하면 개시일부부터 2달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 모든 법인은 법인신고내용·사업장 신고내용 변동있으면 변경일부부터 15일내 변경신고함.

제111조 사업자등록

- 신규 사업개시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 「부가가치세법」 규정 준용됨(세무서장은 7일내 교부 통지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하거나 본 법 제109조의 법인설립신고한 경우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봄.



-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함.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비치·복식부기로 기장하며, 장부관련 중요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함(이중기록 대차평균원리의 정규부기형식).
- 장부보존기한은 「국세기본법」상 7~10년(「상법」은 5년)
- 무기장·비치·기록없으면 가산세 부담함(산출세액×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중 큰 금액).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무무 등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연간 50만원 초과(2010년부터는 액수 무관)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발급명세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함.
- 과세관청의 요청 있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함.

제113조 구분경리

- 구분경리 대상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귀속소득과 기타사업,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사업, 합병법인 이월결손금과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이 함께 있는 법인(중소기업간이나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시 구분경리 제외), 합병(분할)법인의 피합병법인에게서 승계한 사업과 기존사업, 법인세 감면법인 등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 분할신설법인도 분할법인에게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과 기타의 것을 별개회계로 구분경리함.
- 구분경리 방법 : 구분할 사업, 재산별로 자산·부채·손익을 법인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경리, 개별 구분 불가능한 공통부분은 개별 숫자에 의한 합리적 배분산식(시간·면적·이용도·기여도

등)으로 안분 : 매출액이나 개별비용으로 배분함.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2002년부터는 폐지됨) : 상법공시규정 유지

제115조 결산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2008. 12. 26 삭제)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은 보관하여야 함(즉, 최장 6년 3개월 내지 최단 5년 3개월을 보관해야 함).
- 사업연도 개시전 5년 이전의 결손금을 공제하려는 법인은 결손금 발생사업연도의 증빙을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함.
- 세법상 사업자(「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로부터 재화·용역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 : 인정되는 투명지출증빙서류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외국신용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월별이용대금명세서⊕ERP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거래정보임.
- 투명증빙서류제출 불필요한 경우 : 공급받은 금액(부가세 포함) 건당 3만원 이하,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자에게서 용역공급받은 경우 등,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 의미적은 경우 등)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발행의무 등

- 사업자 아닌 소비자(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공급하는 법인(소매업·음식·숙박업 등)은 신용카드가맹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맹점가입지도 가능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됨. 다만, 판매시점정보시스템으로 인해 타사업자 매출과 합산발급시 제외됨(사실과 다른 것이 아님).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 사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업종 등을 고려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함.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시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됨.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 제외됨(항공기에서 판매되는 재화).
-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 요청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계산서·세금계산서 교부시 제외)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19조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의 제출

- 사업연도중 주식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으로 주주·지분비율·액면총액 등의 변동)사항있는 법인은 법인세 적법 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협 등 조합법인은 아예 제출의무 없으나, 중앙회·연합회는 제출 의무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외의 주주는 적용제외, 주권상장 아닌 기타 법인의 소액주주도 변동명세서 적용제외됨.
- 주식변동내용 불성실 제출 : 변동된 주식의 액면가×2%의 가산세 적용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특례

- 법인에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분배금 지급자는 지급명세서 작성·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며, 개인에 대한 지급 및 기타 외

- 국인에 대한 지급의 모든 경우에 「소득세법」 제164조 규정 준용함.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 (휴·폐업은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지급명세서미제출이나 불성실제출시 미제출·불성실 지급금액×2%의 가산세 부과됨.
 -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 경우 : 비과세나 면제소득만임(외국에 대한 소득지급의 원천징수,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로 대신하는 경우 등 : 2002년 7월 1일부터는 제출)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함(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제출 면제소득 : 국내법상 비과세 면제소득,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 등 고정사업장 귀속분, 퇴직·양도소득, 사업·인적용역소득, 조세조약상 면제신청소득, 경마환급금, 카지노이익 등,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소득, 지급명세서제출 실효성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

제120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법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 부가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봄.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재화·용역공급시 계산서·영수증 작성교부(토지·건축물 공급시는 제외)하여야 하며, 교부한 것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교부받은 것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재화수입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는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 예외를 인정).
-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하는 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작성·교부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는 본 법상의 계산서관련 작성·교부·합계표 제출의 제반의무이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 면세 1차생산물(농·축·수·임산물 등)의 위탁판매·대리인판매에 있어서, 위탁자나 본인이 자기명의로 계산서 등 작성교부의무가 원칙이지만, 위탁자·본인이 작성교부안한 경우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작성교부 및 합계표제출함.
- 계산서 작성교부·합계표제출 등 제반내용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시행령 제211조·제121조 규정 준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적용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적용됨.
- 매출·공급, 계산서 미교부, 불성실 작성,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성실 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1%의 가산세 부과됨.

제121조의2·제121조의3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피투자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의 명세서(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시 2년 이내에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자료제출·보완요구를 받은 법인(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경우)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122조 질문·조사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행사와 해당 의무자,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경영·관리책임자, 납세의무자와 거래있는 자
- 세무공무원은 조사원증 제시해야 하며 수입금액 조사결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능함.